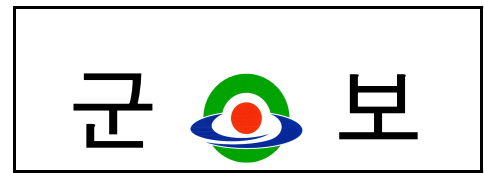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73호 2019. 6 1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입법예고

○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74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입 법 예 고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천군 상징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징물의 종류(안 제3조)

-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기, 군가, 농특산물공동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

나.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상징물 관련사업 시행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다. 상징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제작 및 행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승인절차 :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 군정조정위원회 심사 → 사용승인

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 납부 :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
3. 캐릭터 : 별표 3
4. 군기 : 별표 4
5. 군가 : 별표 5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
7. 군목 : 소나무
8. 군화 : 목련
9. 군조 : 독수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군기) 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

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 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
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

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천군 군기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가. 심벌마크(symbol mark)



초록색

푸르고 아름다운 산을 형상화 한 것으로 예천의 청정한 산을 상징

파란색

맑은 물을 형상화 한 것으로 두 팔로 포용하는 화합을 상징

주황색

활의 과녁과 기름진 대지를 상징

나. 시그니처(signature)



예천군



예천군

다. 엠블럼(emblem)



【별표 2】

브랜드 슬로건

가. 슬로건(slogan)



■ 슬로건 설명

-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 도시로서 브랜드를 특화하고 예천군의 대표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
- 예천의 싱그런 자연을 상징하는 산과 물 속에 호박벌을 삽입하여 청정 자연도시, 곤충도시로서의 예천을 상징

나. 그리드(grid)



【별표 3】

캐릭터

가. 예천군 캐릭터

1) 기본형



■ 캐릭터 설명

- 명심보감에 기록된 효자 도시복을 형상화

2) 응용형(A)



3) 응용형(B)



나. 곤충연구소 캐릭터

■ 캐릭터 설명

- 곤충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벌을 형상화
- 코니는 머리빨가위벌
페디는 호박벌을 모델로 함



【별표 4】

군 기

가. 정 기



■ 군기 설명

- 기면은 흰색으로하고
길이와 넓이는 2와 3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길이 80cm 넓이 120cm로
한다.

나. 약 기



【별표 5】

군 가

작곡 : 권상현

작사 : 장익환



1. 소 백 산 우 람 차 게 나 래 를 떠 고

내 성 천 굽 이 쳐 서 기 름 진 들 판

물 맑 고 인 정 많 은 우 리 예 천 은

옛 부 터 인 재 많 은 선 비 의 고 장 빛 내

자 우 리 예 천 슬 기 의 고 - 장

샘 물 이 솟 아 나 듯 영 원 하 리 라

【별표 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설명

- 네이밍 의미 : 신도청 중심지역 예천이 새롭게 움트고, 역동적으로
발돋움 한다는 의미로 예천의 희망찬 미래를 뜻함
- 디자인 컨셉 : 물 좋은 고장 예천을 상징하는 대표적 명승지 회룡포를
연상케하고 청색 디자인 컨셉은 맑은 물과 청정의 고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됨을 의미

【별표 7】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

상징물 종류	관리부서	비고
심볼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기획감사실	
브랜드 슬로건	기획감사실	
캐릭터(예천군 캐릭터)	기획감사실	
캐릭터(곤충연구소 캐릭터)	곤충연구소	
군 기	총 무 과	
군 가	기획감사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농 정 과	
군목, 군화, 군조	기획감사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사 용 준 수 각 서

- 성명(대표자) :
- 상호(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상기 본인은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도록 하며, 위반 시 사용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특정한 정치활동 조장 또는 개인의 심벌·상표·의장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상징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예천군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

다. 사용승인서 상의 용도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한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변경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승인서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전화)		
승인내용	상징물 종류			
	승 인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변경)내용			
	승인내용·조건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천군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참고자료〉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43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에 지식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지식재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 별표 4

【별표 4】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4. 지방자치단체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의5(지식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8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하려는 경우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에 그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호의 경우 그 사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 면제
2. 그 밖의 경우: 사용료등의 100분의 50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 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 획 감 사 실	
연 락 처	주무관 장은정 650-6051